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8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박홍배 · 이언주 · 허성무
민홍철 · 김문수 · 이상식
손명수 · 김태선 · 문정복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 · 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공연 개최와 홍보 · 유통뿐 아니라 소방 · 피난 · 방음 등 안전 ·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조제4항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규모공연공간”이란 제4호에 따른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객석 수·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2. 소규모공연공간을 활용한 공연의 개최 및 공연예술인과의 연계 지원
3. 소규모공연공간의 안전·시설환경 개선 지원
4. 소규모 공연의 홍보·유통 지원
5. 그 밖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

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u>7. “소규모공연공간”이란 제4호에 따른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객석수·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u>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생 략)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8.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 규모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1.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2. 소규모공연공간을 활용한 공연의 개최 및 공연예술인 과의 연계 지원 3. 소규모공연공간의 안전·시 설환경 개선 지원 4. 소규모 공연의 홍보·유통 지원 5. 그 밖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한 사업
---	---